

민권법 제6편

공지 사항



메트로버스와 메트로레일을 이용하는데 한국어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202-637-7000번 (청각 장애인 전화 202-638-378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또는 MetroOpensDoors.com 웹 사이트를 이용해 주십시오.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
(워싱턴 수도권 교통국)

Title VI and Language Assistance Coordinator
(민권법 제6편 및 언어 지원 조정자)
Office of Civil Rights (민권실)
600 Fifth Street, NW, 7G
Washington, DC 20001
전화: 202-962-1082
팩스: 202-962-2471

“공명 정대함이란
모든 인종, 피부색,
출신국의 납세자들이
기여하는 공공 기금을,
인종, 피부색,
출신국으로 인한
어떠한 차별을
촉진, 확립, 장려,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민권법 제6편
제정을 천명하며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
(워싱턴 수도권 교통국)

Title VI and Language Assistance Coordinator
(민권법 제6편 및 언어 지원 조정자)
Office of Civil Rights (민권실)
600 Fifth Street, NW, 7G
Washington, DC 20001
전화: 202-962-1082
팩스: 202-962-2471

메트로에 관한 일반 정보는
MetroOpensDoors.com을 방문하시거나
202-637-7000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청각장애용: 202-638-3780 번)

민권법 제6편에 의한 공지 사항

본 안내서는 여러분이 1964년 민권법 제6편에 명시 되어 있는 여러분의 권리를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동법 제6편은 연방 재정 보조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에 의한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연방법입니다.

민권법 제6편에 관한 메트로의 정책 지침

워싱턴 수도권 교통국(메트로)은 어느 누구도 메트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거절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실천하지 못할 경우, 1964년 민권법 제6편 수정법에서 설명하는,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메트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1. 교통 서비스의 질과 수준을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에 상관 없이 모두에게 제공할 것.
2. 소수층과 저소득층에 사회 및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및 사업을 포함하여, 인류의 보건 및 환경에 심히 불균형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곳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시정함.
3. 교통 사안을 결정할 때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함.
4. 소수층과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는 프로그램 및 사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혜택을 거절, 감소 또는 지연시키는 것을 예방함.
5. 영어 구사력이 제한된 사람들이 각종 프로그램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

총책임자, 고위 책임자, 감독자 및 직원들이 민권법 제6편에 관한 메트로의 공약을 수행하는 책임을 공유함. 동법 제6편/언어 지원 조정자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일상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짐. 민권법 직원들은 불평 절차 과정을 통해 들어오는 동법 제6편과 관련된 불평을 접수하고 조사함.

영어 구사력이 제한된 사람들을 위한 메트로의 정책 지침

연방 교통국 수혜 부서들은 영어 구사력이 제한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업에 대한 혜택, 서비스, 정보 및 기타 중요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단계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메트로에서는 영어 구사력이 제한된 사람들을 위하여 언어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메트로버스, 메트로레일 및 메트로엑세스 이용 시에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언어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 통역 서비스를 100가지가 넘는 언어로 제공하고 있으며, 메트로 사무실 고객 서비스 번호인 202-637-7000번에 전화하시면 이 통역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반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 반까지입니다. 서면 상의 언어 지원은 MetroOpensDoors.com을 통해 제공됩니다.

누가 민권법 제6편과 관련된 불평을 신고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귀하가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에 근거하여 민권법 제6편과 관련된 차별을 받았다고 믿으실 경우, 메트로에 동법 제6편 고발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동 고발을 고발 대상 차별이 일어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권합니다.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한 고발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발자의 성명, 주소, 전자우편 및 전화번호
- 언제, 어떻게, 왜, 고발자는 차별을 받았다고 믿는지를 설명.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내용을 설명.
- 고발자가 주장하는 차별을 한 사람들의 성명 (알고 있는 경우)
- 메트로에서 고발자의 주장을 지원 또는 진상을 확실히 알기 위해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성명(알고 있는 경우)
- 고발자의 서명

인쇄가 가능한 민권법 제6편 고발 양식은 MetroOpensDoors.com 또는 202-962-1082번으로 전화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고발은 즉시 조사를 할 것입니다. 일단 접수가 되면, 그 고발은 조사관에게 배정됩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받은 경우, 민권 사무소는 보통, 정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6편과 관련된 고발에 대한 조사를 완결합니다. 추가 관련 정보 입수에 따라 고발 해결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발자가 해결 내용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경우,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 요청은 고발 해결에 관하여 처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달력 날짜 수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면 항소장에는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써야 합니다. 고발자는 처음의 조사 결정이 왜 부적절하다고 믿는지 그 이유(들)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민권국장은 그 고발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고 최종 대답을 승인할 것이며 이 대답에는 외부 기관에 고발을 하는, 고발인의 권리를 통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